붙 임 1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 공고문**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1. 지정목적 : K-water 고령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시설에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고령군, 성주군, 대구광역시**인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다. K-water 고령권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7.(화)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7.(금)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 및 K-water 고령권지사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 접수처: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 sjuhee25@kwater.or.kr로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
 ☞ 이메일 및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시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2026. 12. 7.(월) (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고령권지사(담당자 석주희, ☎054-950-7223)로 문의

K water **고령권지사장**

붙 임 2 협력업체 기본 인력 및 장비

협력업체 기본 인력 및 장비

□ 기본인력

기술자명	단 위	인 원	비 고
1. 책임기술자	인	1인 이상	토목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소지자
2. 용접공	인	3인 이상	
3. 배관공	인	2인 이상	

□ 기본장비

장비명	단위	광역상수도		비고
		규 격	수 량	
1. 발전기	대	50㎾	1이상	
2. 발전기	대	30㎾	1이상	
3. 용접기	대	15㎾	2이상	
4. 양수펌프	대	3″~5″	2이상	
	대	6″이상	2이상	
5. 착암기	대	콤푸레사	1이상	
6. 콘크리트컷터	대		1이상	
7. 관절단기	대		1이상	
8. 산소절단기	대		1이상	
9. 플레이트콤팩터	대	1.5ton	1이상	
9. 작업차량	대	카고크레인 (5톤 이상)	1이상	카고크레인 : 미보유시 임대계약
10. 통신장비	대	휴대폰	1이상	
	대	무선호출기	2이상	
11. 기타 장비	식	소모품	1	
12. 안전장구	개	안전휀스	20이상	
	식	안전모 등	1	

붙 임 3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 심사기준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평가기준</th><th>배점</th></tr>
<tr><td rowspan="2">1.업체능력</td><td>공사
실적</td><td>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
실적합계액</td><td>○ 평가방법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td><td>50</td></tr>
<tr><td>신용도</td><td>재정상태
견실도</td><td>1) 자본금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2) 부채비율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td><td>10
5

5</td></tr>
<tr><td>2.인력보유</td><td>적정
기술
인력
보유
현황</td><td>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기술인력
보유현황</td><td>○ 보유인원수에 기술자격계수를 곱하여 산출
<table>
<tr><th>보유인력</th><th>기술자격계수</th></tr>
<tr><td>- 토목기사1급 이상</td><td>4점</td></tr>
<tr><td>- 토목산업기사</td><td>3점</td></tr>
<tr><td>- 용접기능공</td><td>2점</td></tr>
<tr><td>- 배관기능공</td><td>2점</td></tr>
<tr><td>- 작업인부</td><td>1점</td></tr>
</table></td><td>20</td></tr>
<tr><td>3.장비보유</td><td>적정
장비
보유
현황</td><td>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보유현황</td><td>○ 보유장비수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
<table>
<tr><th>구분</th><th>보유장비</th><th>규격</th><th>계수</th><th>최대</th></tr>
<tr><td rowspan="10">광역</td><td>- 백호</td><td>0.7㎥ 이상</td><td>3점</td><td>3점</td></tr>
<tr><td>- 발전기</td><td>50kW 이상</td><td>2점</td><td>4점</td></tr>
<tr><td>- 발전기</td><td>30kW 이상</td><td>2점</td><td>4점</td></tr>
<tr><td>- 카고크레인</td><td>5톤 이상</td><td>2점</td><td>2점</td></tr>
<tr><td>- 콘크리트 커터</td><td>포장절단용</td><td>2점</td><td>2점</td></tr>
<tr><td>- 플레이트콤팩트</td><td>1.5ton</td><td>2점</td><td>2점</td></tr>
<tr><td>- 양수기</td><td>6“ 이상</td><td>2점</td><td>4점</td></tr>
<tr><td>- 양수기</td><td>3“ ~ 5”</td><td>1점</td><td>3점</td></tr>
<tr><td>- 부단수천공기</td><td></td><td>1점</td><td>1점</td></tr>
</table></td><td>20</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100</td></tr>
</table>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등급별 배 분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업체수																			배점비 (%)	배점별 점수분포 현황		
등급	배분율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점	10점	50점
수	10	-	-	-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100	5.0	10	50
우	20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4	4	4	90	4.5	9	45
미	40	1	1	2	1	2	2	2	3	4	5	6	5	6	6	6	7	7	8	8	80	4.0	8	40
양	20	-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70	3.5	7	35
가	10	-	-	-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2	60	3.0	6	30

붙 임 4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

제1조 (목 적) 이 협약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장(이하 “K-water”이라 한다)과 ○○○ 사장(이하 “협력업체”이라 한다) 간에 긴급복구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사고”란 K-water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거나, 수도시설 및 설비의 고장·파손 또는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상황에서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긴급복구공사”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3. “긴급복구체제”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유지해야 할 인력·장비·자재 등의 최소 요건으로서 지정공고(K-water의 「수도사고 및 계획단수 업무처리기준」 Ⅴ-4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고가 발생하여 K-water가 협력업체에게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
2. 협력업체의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K-water가 각종 현황을 확인하거나 협력업체를 지도하는 경우.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　　년　　월　　일)로 부터 3년(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긴급복구체제의 유지 등) ① K-water는 협력업체가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제4조에서 정한 협약기간내 제2조 3호의 협력업체 지정요건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K-wate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K-water와 협의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는 제1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도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신속히 긴급복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K-water는 제2항의 협력업체 지정요건 변동사항 발생으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협력업체의 긴급복구공사 시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K-water는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긴급통신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의뢰 및 응급조치 등) ① K-water는 수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수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공사업체 선정 절차로는 회복할수 없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력업체에게 즉시 긴급복구공사의 시행을 요청하면서 그에 따른 작업의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작업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요청을 받는 즉시 가옥침수, 구조물 손괴, 교통마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안전철책·조명설비·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복구공사의 시행) ①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시 안전조치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시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K-water의 조치사항) K-water는 긴급복구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협조·대외홍보 등 지원을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시공 등의 제재) 협력업체가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할 때 부적절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태만하게 시공하는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 K-water는 재시공 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0조(준공신고서 등 제출) ①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내역서, 시공 관련 사진 및 경찰관서 신고사항 등이 첨부된 준공신고서를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수도사고의 원인, 긴급복구공사에 활용된 기술 및 변경도면과 관련된 자료 3부를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작성할 때 재료의 성분분석 등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① K-water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K-water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협력업체의 대가지급청구서(K-water가 정한 긴급복구공사품셈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① 협력업체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1.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3년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증권으로 K-water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K-water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구조물 : 5%
2. 상하수도 관로 : 3%

③ 협력업체는 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등의 책임) ①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및 하자보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협력업체가 긴급복구 및 하자보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K-water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K-water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협력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별표2에 따라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로 산정한 총 감점의 누계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4. 협력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폐기물을 무단폐기 한 경우가 1회 이상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K-water와 협력업체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K-water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제2항의 통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K-water는 이의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K-water는 신공법을 소개하거나 협력업체 간에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K-water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K-water와 협력업체는 서면합의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K-water와 협력업체는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K-water와 협력업체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K-water과 협력업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도 급 인 ○ ○ ○ 관리단장 ㅇ ㅇ ㅇ (인)

수 급 인 ○ ○ ○ 대 표 ㅇ ㅇ ㅇ (인)

[별표1] 긴급복구 업무 기본인력 및 장비

□ 신청자격 요건

○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 기본인력

기술자명	단 위	인 원	비 고
1. 책임기술자	인	1인 이상	토목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소지자
2. 용접공	인	3인 이상	
3. 배관공	인	2인 이상	

□ 기본장비

장비명	단위	규 격	수 량	비고
1. 발전기	대	50㎾	1이상	
2. 발전기	대	30㎾	1이상	
3. 용접기	대	15㎾	2이상	
4. 양수펌프	대	3″~5″	2이상	
	대	6″이상	2이상	
5. 착암기	대	콤푸레사	1이상	
6. 콘크리트컷터	대		1이상	
7. 관절단기	대		1이상	
8. 산소절단기	대		1이상	
9. 플레이트콤팩터	대	1.5ton	1이상	
10. 작업차량	대	카고크레인 (5톤 이상)	1이상	카고크레인 : 미보유시 임대계약
11. 통신장비	대	휴대폰	1이상	
	대	무선호출기	2이상	
12. 기타 장비	식	소모품	1	
13. 안전장구	개	안전휀스	20이상	
	식	안전모 등	1	

[별표2] 긴급복구 협력업체 제재 기준표

구 분		점수/건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 사망사고(건)	-20
	· 장애등급 판정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 기준)	-20
2. 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민원 또는 사회적 문제 야기시		-15
3.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15
4. 안전 지적(점검, 신고, 확인 등)		-5
5. 하자 복구 기간 지연	· 15일 이상	-5
	· 5 ~ 14일	-3
	· 1 ~ 4일	-2
6. 긴급복구 공사현장 도착 지연	긴급복구공사 현장 도착 지시 시점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공사현장에 도착한 경우	-10
7. 긴급복구공사 지연	케이워터기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긴급복구공사가 지연된 경우	-10

※ 제재 기준

○ 총 감점 누계 **-50점 이상 : 협약 해지**

-25점 이상 : 9개월간 업무수행제한

-15점 이상 : 6개월간 업무수행제한

-10점 이상 : 3개월간 업무수행제한

※ 누적 감점은 1년 단위로 소멸함

※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에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감점에 대한 평가 및 적용은 협약체결시 평가(인력, 장비) 대상인 본부별 단위로 평가 및 적용함(협약 해지, 업무수행제한)